

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(제10조의5 관련)

평가항목	배점범위	평가방법
1. 기술자 능력	50	가. 보유기술자의 등급별로 평가 나.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을 평가
2. 측량용역 수행실적	30	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(금액 및 건수)을 평가
3. 신인도	10	가.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을 평가 나. 측량업자의 고용유지율을 평가
4. 신용도	8	측량업자의 신용상태와 재무상태를 평가
5. 교육이행실적	2	보유기술자의 교육이행실적을 평가
6. 감점 평가기준	-10	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

비고

1.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2. 공동도급으로 측량용역을 수행한 경우 측량용역 수행실적 중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측량용역 금액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.